

19세기 경상우병영의 등록을 통해 본 지방관의 등록 작성과 관리

김 완 호 *

-
- | | |
|--------------------------|--------------------------|
| 1. 머리말 | 4. 경상우병영의 謄錄 보관 및 비변사 상납 |
| 2. 경상우병영의 謄錄 작성 | 5. 맺음말 |
| 3. 『營總』에 수록된 謄書式과 謄錄의 비교 | |
-

초록: 이 글은 경상우병영의 사례를 통해 등록의 작성 방식을 검토한 연구이다. 19세기 경상우병영의 업무지침서인 『營總』에 수록된 등록의 작성 지침을 바탕으로 같은 시기인 19세기 경상우병영에서 작성한 등록인 『慶尙右兵營啓錄』 및 『慶尙右兵營關牒』을 비교 검토하였다. 『營總』의 各項定式에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국왕에게 올린 狀啓, 外方啓本을 등서하는 지침인 '備局件啓錄謄式'과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비변사 또는 의정부와 주고받은 關文, 牒畧을 등서하는 지침인 '備局關牒謄式'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營總』에서 문서를 등서하는 세세한 지침들을 검토하여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이 대체로 『영총』의 등서 지침에 맞추어 작성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 중인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은 경상우병영에서 작성하여 비변사로 上納한 등록들이다. 즉 등록을 작성한 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상급 관서에 보낸 등록에 해당한다. 경상우병영은 국왕에게 올린 문서들은 3건을 등서하여 보관하였지만, 비변사 또는 의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들은 별도로 등서하여 보관하지 않고 다른 문서들과 함께 등서하여 관리하였다.

핵심어 : 등록,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경상우병영계록, 경상우병영관첩, 영총, 국왕, 비변사, 규장각

*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팀 전임연구원.

1. 머리말

臚錄은 조선시대 관서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등서한 책이다. 조선시대에는 문서라는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 이를 책에 옮겨 기록한 형태인 등록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즉 관서 간 문서의 行移가 끝난 이후 문서의 내용을 나중에 참고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서에서 문서의 내용을 옮겨 기록한 것이다. 중앙 관서 뿐만 아니라 관찰사, 절도사, 수령 등 지방관들도 주고받은 문서를 등서하여 등록을 만들고 보관 및 활용하였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문서 관리 체계를 통해 작성된 등록들은 당시 문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이용하려고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지만 등록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중앙 관서의 등록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의 작성 방식을 검토한 연구들은 소략하게나마 있지만,¹⁾ 지방관의 등록은 주로 문서행정이나 업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상으로 활용되어진 것이 대부분이다.²⁾ 그동안 등록의 작성과 관련된 연구의 한계가 있었던 것은 등록의 작성 지침이 수록된 『營總』이라는 경상우병영의 업무지침서가 있었지만, 경상우병영의 문서행정과 관련한 연구³⁾ 및 문서를 포장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⁴⁾에 활용하는 데 그쳐 실제 등록과 비교 검토를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총』에 수록된 등록의 작성 지침과 『영총』과 유사한 시기에 경상우병

- 1) 이근호, 2008 「備邊司臚錄의 敘述體系와 內容」, 『사학연구』 91, 153-187면; 고민정, 2014 「『繼後臚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13, 199-235면; 김완호, 2020 「조선후기 社稷署의 臚錄 작성과 문서 행정 -장서각 소장 『社稷署臚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6, 321-360면.
- 2) 이선희, 2005 「18세기 수령과 관찰사의 행정마찰과 처리방식」, 『古文書研究』 27, 85-111면; 2009 「조선후기 영남지방 지방관의 행정소통 체계와 조정방식」, 『영남학』 16, 45-75면; 2010 「18세기 경기도관찰사의 업무 실태와 특징 -『畿營狀啓臚錄』을 중심으로」, 『藏書閣』 23, 89-115면.
- 3) 김건우, 2007 「조선후기 慶尙右兵營의 문서행정에 관한 일고찰 -『營總』을 중심으로-」, 『규장각』 31, 215-235면.
- 4) 우인수, 2007 「朝鮮後期 慶尙右兵營의 文書 包裝과 呈家式」, 『歷史教育論集』 39, 223-255면.

영에서 작성한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4책 및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을 함께 검토하여 등록의 작성 방식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⁵⁾ 『영총』은 乾·坤 총 2책인데, 乾은 경상우병영의 업무에 대한 기록이고 坤은 金山郡 업무에 대한 기록이다.⁶⁾ 따라서 경상우병영의 등록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담고 있는 책은 『영총』 乾에 해당한다. 『영총』 乾은 1804년 작성이 완료되었는데, 이후 1833년 또는 1844년까지의 사례들을 공백지에 追記한 것으로 추정된다.⁷⁾ 『경상우병영계록』 4책은 각각 1856년 2월-1859년 9월, 1859년 9월-1861년 3월, 1876년 3월-1880년 8월, 1890년 윤2월-1892년 1월의 기록들이다. 1, 2, 4책의 表題는 ‘慶尙右兵營啓錄’으로 동일하고 3책의 표제만 ‘蠹營啓錄’이다. 『경상우병영관첩』 2책은 1882년 12월-1891년 11월, 1854년 2월-1867년 2월의 기록들로, 표제는 모두 ‘慶尙右兵營關牒’이다.

이 글에서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국왕에게 올린 문서,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비변사 또는 의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를 등서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는 지방행정체계에 있어 위로는 경상도관찰사의 지휘를 받고 아래로는 경상우도에 소속된 鎭管을 담당하는 兵馬僉節制使를 지휘하며 문서를 주고받았다. 또한 경상우도병마절도사는 直啓가 가능한 중2품 무관직으로, 경상도관찰사를 경유하지 않고 국왕에게 문서를 올리거나 중앙 관서와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영총』에 수록된 등록의 작성 지침은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국왕에게 올린 문서 및 중앙 관서인 비변사 또는 의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를 등서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경상우병영계록』은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국왕에게 올린 문서, 『경상우병영관첩』은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중앙 관서인 비변사 또는 의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를 등서한 등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5)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4책과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營總』(B8 A40 1, B8 A40 2) 2책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營總』은 2007년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서 해제를 덧붙여 『脫草譯註 營總』으로 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원본 『營總』을 열람하고 『脫草譯註 營總』을 참고하였다.

6) 김진우, 앞의 논문, 215면.

7) 우인수, 2007 「『영총(營總)』 해제」, 『脫草譯註 營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9-10면.

먼저 2장에서는 경상우병영에서 작성한 등록의 수록 체제와 粧冊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경상우병영의 등록들이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작성하였고 어디서 장책한 것인지를 『영충』의 지침과 『경상우병영계록』 및 『경상우병영관첩』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경상우병영의 등록에 문서를 등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충』에 ‘備局件啓錄騰式’과 ‘備局關牒騰式’이라는 문서의 등서 방식이 수록되어 있다. 이 등서 방식이 어떤 문서를 베끼는 서식인지 이해하기 위해 『典律通補』와 『經國大典』의 문서식을 검토하고 이 등서 방식을 따라 작성한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을 함께 검토해보겠다. 4장에서는 경상우병영에서 작성한 등록의 관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보편적으로 등록은 작성한 관서에서 보관하며 활용하지만,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은 비변사에서 관리한 책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본이 되는 등록들을 경상우병영에서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경상우병영의 騰錄 작성

경상도는 左道와 右道에 각각 兵營을 설치하여 병마절도사를 파견하였다. 또한 좌도와 우도의 병마절도사 이외에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직하여 경상도에는 총 3인의 병마절도사가 있었다.⁸⁾ 경상좌도의 병영은 울산, 우도의 병영은 창원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우도의 병영을 진주로 옮기게 되었다.⁹⁾ 진주로 옮긴 경상우병영은 축석산성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羸營이라 부르기도 하였다.¹⁰⁾

경상우도병마절도사는 종2품 외관직에 해당하는 지방관으로, 국왕에게 직접 문서를 올릴 수 있었다.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을 보면 2품 이상의 아문은 直啓

8) 『經國大典』 卷4, 兵典 外官職 慶尙道

“兵馬節度使 三員【從二品 二左道·右道 一觀察使兼】”.

9) 『宣祖實錄』 162권, 선조 36년(1603) 5월 2일 정사 5번째 기사.

10) 김건우, 앞의 논문, 217면.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續大典』, 『大典通編』을 거쳐 『大典會通』까지 변하지 않았다.¹¹⁾

또한 경상우도병마절도사는 다른 지방관 및 중앙 관서와 문서를 주고받았다. 『영총』 乾에서는 이를 牒呈衙門과 通關衙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¹²⁾ 대체로 종2품보다 품계가 높은 관서로 첩정을, 품계가 같거나 낮은 관서로 관문을 사용하였는데, 정3품아문인 승정원으로 첩정을 보내고, 정2품아문인 육조 중 병조를 제외한 이조, 호조, 예조, 형조, 공조로 관문을 보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문서를 주고받는 관서의 품계 뿐만 아니라 관서의 업무체계에 따른 상하관계도 고려한 문서 행정으로 볼 수 있다.¹³⁾

『영총』 乾¹⁴⁾은 경상우병영에서 병마절도사와 虞侯, 審藥 등의 밑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하급 관리인 營房이 수행하는 세부적인 업무 지침인 營房事例冊과 문서 및 문서의 피봉을 작성하는 지침과 문서를 책자에 등서하는 지침을 정리한 各項定式, 그리고 상하관이 相見禮하는 방식과 병마절도사가 문서를 수발하는 관청 등 다양한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다.¹⁵⁾ 이 중 영방사례책은 六房 중 吏房, 兵

11) 『經國大典』 卷3, 禮典 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承政院掌隸院司諫院宗簿寺 亦得直啓 各司有緊事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直行移【相考事外 皆啓】其餘衙門並報屬曹 ○凡中外文字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外官於奉命使臣 中外諸將於兵曹 並用牒呈 都摠府 用關】○官府文字 並置立案 以憑後考”.

12) 『營總』 乾

牒呈衙門

宗親府 議政府 忠勳府 儀賓府 中樞府 耆老所 備邊司 義禁府 御營廳 禁衛營 常平廳 宣惠廳 內醫院 司饗院 訓練都監 都提調 左右捕廳 摠戎廳 守禦廳 兵曹 巡營 承政院

通關衙門

吏曹 戶曹 禮曹 刑曹 工曹 漢城府 司憲府 弘文館 成均館 校書館 掌隸院 尙瑞院 掌樂院 宗簿寺 司僕寺 軍器寺 司諫院 通禮院 尙衣院 他道監營

13) 김건우, 앞의 논문, 218면.

14) 이하 본문에서 『營總』 坤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營總』 乾은 모두 『營總』으로 통일하고 각주는 책의 편제에 따라 『營總』 乾으로 기술하였다.

15) 우인수는 『營總』 乾의 내용을 크게 營房事例冊, 各項定式, 上下官相見禮로 구분하였다. (우인수, 앞의 논문, 230면 참고.)

房, 刑房, 禮房과 承發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병방의 업무는 월 별로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영방사례책을 보면 영방이 각각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지 설명되어 있다. 경상우 병영은 병영이기 때문에 주로 병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가 많았다. 병방에서는 주로 習操, 招試, 軍保 상납, 褒貶 등과 관련하여 국왕, 비변사, 병조, 감영, 수령에게 보내는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방은 解由文書와 관원 부임, 예방은 箋文과 膳狀 등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고 있었다.¹⁶⁾ 이처럼 문서는 영방들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등록은 영방 중 승발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승발은 문서의 수발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인데, 『영총』에는 승발의 업무로 문서 및 책자의 수발을 비롯하여 책 표지의 장책, 등록의 작성 등에 대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승발의 업무는 크게 6가지인데, 그 중 첫 번째 업무는 啓錄과 비변사에 보낼 등록의 수발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의 細註를 보면 ‘계록은 한달치 내용을 등서한 후 1장을 넘겨 다음달의 내용을 등서한다.’¹⁷⁾는 등록의 작성 지침이 확인된다. 이 내용은 각항정식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월이면 1월의 啓草를 모두 모아 등서한 후 1장의 공백지를 남겨놓는 방식이라 설명하고 있다.¹⁸⁾

16) 김건우, 앞의 논문, 218-224면.

17) 『營總』乾, 營房事例册 承發掌

“【備局件狀紙別浮不剪次】

一 啓錄 三册修正 一件使主上 一件營上 一件備局修啓上送 備邊司來關及報牒啓錄 一體各件精書 合三件是齊 **【每朔分書 而假令正月啓錄騰出後 越一張 二月啓錄騰出 二月啓錄騰出後 又越一張 三月啓錄騰出 他朔倣此】**

一 日記正書 一件使主上 草本營上 爲考事錄是齊

一 付撥公事及關子 次知舉行是齊

一 備局啓錄一件 來關一件 報牒一件 三件粧册 所入黃衣 綾花印出合六衣 紅細絲 稱量淺數 受出是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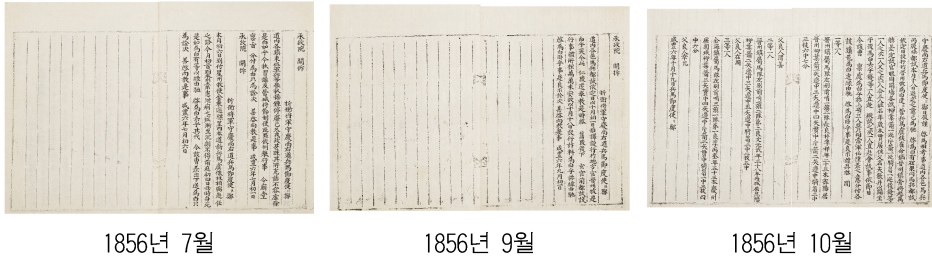
一 迎赦時 諭書節鉞並除之 印信載陪瓮 以易人馬把立

一 蠶祭行次時 亦倣此”.

18) 『營總』乾, 各項定式

“一 騰書之際 不可以此月彼月 混同傳騰 假令正月則正月內啓草 沒數收聚畢騰 又結空一張

이처럼 경상우병영은 월을 구분하여 문서를 등서하는 등록의 전체적인 작성 지침이 있었다. 아래의 <그림 1>은 『경상우병영계록』의 첫 번째 책에서 매달 종이를 바꾸어가며 등록을 작성한 실제 사례이다. 1856년 7월의 문서는 7월 초1일과 7월 초6일 2건이고, 8월은 등서된 문서가 없으며 9월의 문서는 종이를 바꾸어 등서되어 있다. 9월의 문서가 1건이고 내용이 길지 않아 7월 초6일 문서 뒤에 등서할 여백이 있지만, 월을 구분하여 작성한다는 지침에 따라 종이를 바꾸어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경상우병영계록』에서 매달 종이를 바꾸어가며 등록을 작성한 사례

『경상우병영계록』 총 4책은 모두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매달 종이를 바꾸어가며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¹⁹⁾ 그런데 『경상우병영관첩』은 이와 같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다가 중간에 작성 방식을 바꾸었다. 예를 들어 『경상우병영관첩』 두 번째 책을 보면 1863년 10월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부임한 李教俊²⁰⁾ 때의 문서를

後 通十二朔 傍此爲之 各朔條 必各書 秩秩區別 毋有混錯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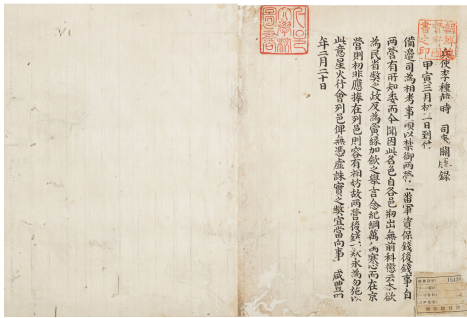
19)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의 세 번째 책 뒷부분에는 1878년부터 1880년까지에 해당하는 兵使趙義贊時報牒謄錄과 兵使趙義贊時府來關謄錄이 첨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20) 『承政院日記』 2669책, 철종 14년(1863) 10월 25일 무술

“○ 兵批 判書金柄學進 以兵批言啓曰 慶尙右兵使·黃海水使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他道水使·防禦使竝擬 何如 傳曰 允 以沈宜冕爲都摠管 禹昌在·洪範福爲同知 林鳳麟爲僉知 李觀淵爲內禁將 李振玉·趙胤顯·金俊鈺爲五衛將 洪在倫爲訓練判官加設 南宮泳爲武兼 李東濬爲部將 李教俊爲慶尙右兵使 沈樂承爲黃海水使 任弘模爲慶尙左水使 俞承柱爲羅州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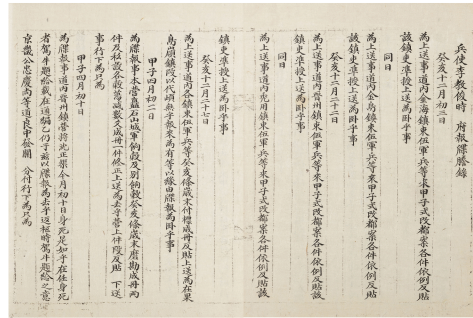
등서한 부분부터 월을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병마절도사의 재임을 기준으로 삼아 종이를 바꾸어 작성하고 있다²¹⁾. <그림 2>는 월을 구분하여 작성한 부분과 월을 구분하여 작성한다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각각 예시한 것이다.

1854년 3월



월을 구분하여 작성한 사례

1863년 12월~1864년 4월



월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사례

<그림 2> 『경상우병영관첩』에서 등록을 작성한 사례

또한 등서한 내용을 책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지침도 확인할 수 있다. 승발이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頭註에 비변사에 보내는 건의 狀紙의 別淨는 자르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다. 또한 첫째, 경상우병영에서는 3건의 기록을 작성하여 경상우도병마절도사 1건, 병영에 1건 보관하고, 비변사에 1건 上送하고, 비변사에서 보낸 관문과 비변사로 보낸 보첩, 기록을 각 건으로 정서한다는 지침과 다섯째, 경상우병영은 국왕에게 올린 계본과 장계를 한 책으로 만들고 비변사에서 경상우병영으로 보낸 관문을 한 책, 경상우병영에서 비변사로 보낸 첩정을 한 책으로 만들어 비변사에 보내는데, 장책하는데 필요한 물품들로 능화관으로 찍은 책표지 합 6衣와 북

牧官 兪知單李晚運 副司果柳興秀”.

21) 1858년 7월부터 1859년 8월까지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재임한 吳吉善 때 작성한 내관등록과 보첩등록도 매달 종이를 바꾸어가며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길선 때 작성한 등록은 오길선의 전임자인 金鑑 때 작성한 내관등록과 보첩등록 사이에 들어가 있다.

은 명주실[紅紬絲] 등은 비용을 계산하여 받아낸다는 지침도 확인된다.²²⁾ 그리고 각항정식의 備局件啓錄膾式과 備局關牒膾式 다음에는 ‘위의 항목 3건의 책은 절대로 그 길이와 넓이를 재단하지 말고 께쪽에 담아 넣은 뒤 맞춰 못질을 하고 油紙로 싸고 草席으로 싸며 장황에 들어가는 물품은 책자와 함께 같이 께쪽 안에 넣도록 한다.’²³⁾는 지침이 있다.

이 지침들을 정리하면, 경상우병영에서 등록의 粧冊을 마무리하여 책자 형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책자로 만들 전의 형태, 즉 등서한 낱장의 종이를 비변사에 보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책을 만들 때는 內紙의 좌우를 재단하고 표지와 내지를 겹쳐 함께 구멍을 뚫은 다음 종이 끈 또는 실 등으로 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 『영총』의 지침들은 책으로 만들 준비까지 마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총』의 지침에서 계록, 관문, 첩정을 각각의 책으로 만든다고 되어있지만 『경상우병영관첩』은 관문과 첩정을 합쳐 한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등록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는 점을 통해서도 문서를 등서한 낱장의 종이를 비변사에 보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경상우병영계록』에 來關膾錄 및 報牒膾錄이 수록되거나 『경상우병영관첩』에 狀啓膾錄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22) 『營總』乾, 營房事例冊 承發掌

“【備局件狀紙別浮不剪次】

一 啓錄 三冊修正 一件使主上 一件營上 一件備局修啓上送 備邊司來關及報牒啓錄 一體各件精書 合三件是齊【每朔分書 而假令正月啓錄膾出後 越一張 二月啓錄膾出 二月啓錄膾出後 又越一張 三月啓錄膾出 他朔倣此】

一 日記正書 一件使主上 草本營上 爲考事錄是齊

一 付撥公事及關子 次知舉行是齊

一 備局啓錄一件 來關一件 報牒一件 三件粧冊 所入黃衣 綾花印出合六衣 紅紬絲 稱量 幾數 受出是齊

一 迎赦時 諭書節鉞並除之 印信載陪從 以易人馬把立

一 蠶祭行次時 亦倣此”.

23) 『營總』乾, 各項定式

“右項三件冊 切勿裁斷其長廣 入盛櫃子後 以釵釘插之 以油紙裹之 以草席裹之 而長橫所入之物 冊子一時同入櫃中次”.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상우병영계록』 세 번째 책에는 趙義贊의 재임(1878-1880) 때 작성한 장계등록과 보첩등록, 내관등록이, 『경상우병영관첩』 첫 번째 책에는 尹泳奎의 재임(1885-1886) 때 작성한 내관등록, 보첩등록과 장계등록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²⁴⁾

따라서 경상우병영에서 잘못 장책하여 올려 보낸 것이 아니라 비변사에서 문서를 등서한 날장의 종이를 장책할 때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은 몇 년에 걸쳐 여러 병마절도사 때 작성한 문서들을 등서하여 한 책으로 묶은 것이다. 이러한 책을 경상우병영에서 특정 시기에 한 번에 책으로 장책하여 올려보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에 등서한 문서들은 누가 무엇을 보고 등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문서는 발송한 문서와 접수한 문서가 있는데, 발송한 문서는 등록을 작성한 관서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啓草'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월을 구분하여 문서를 등서한다는 등록의 작성 지침을 설명할 때 啓草를 모두 모아 등서한다고 하였는데, 이 啓草가 경상우병영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의 초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문서의 草本을 발송한 관서에 남겨두었다가 등록을 작성할 때 활용한 것이다. 이는 관서에서 발송한 첩정을 등록에 등서할 때 '報草'를 기입한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²⁵⁾ 이렇게 경상우병영에서 발송한 문서들은 영방들이 작성하였을 것인데, 『영총』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등록의 작성도 이들의 업무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대 關營과 嶺營에서 啓를 작성하는 書吏의 글씨가 좋아 이들 중 5명을 뽑아 『五經百選』을 간행하기 전 정서본을 만들게 한 사례를 보

24) 趙義贊의 재임 때 작성한 등록은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3책에 兵使趙義贊時狀啓謄錄(43a-98b), 兵使趙義贊時報牒謄錄(99a-104b), 兵使趙義贊時府來關謄錄(105a-106b) 순서로, 尹泳奎의 재임 때 작성한 등록은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1책에 兵使尹泳奎時府來關謄錄(15a-15b), 兵使尹泳奎時報牒謄錄(16a-16b), 兵使尹泳奎時狀啓謄錄(17a-35b)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25) 김완호, 2021 『조선후기 등록의 편찬과 기록문화자원 가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0면.

면,²⁶⁾ 영방 중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등서를 담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도 글씨를 보면 대체로楷書로 정갈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상우병영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를 작성하던 서리들이 등록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영총』을 통해 경상우병영의 등록 작성 체제와 장책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경상우병영은 국왕에게 올린 문서나 비변사 또는 의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를 월 단위로 종이를 바꾸어가며 등서하였다. 그리고 경상우병영에서 문서를 등서한 종이를 장책하지 않고 비변사에 올려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3장에서 는 문서의 등서 지침인 각항정식의 비국건계록등식 및 비국관첩등식과 실제 등록을 비교하여 경상우병영에서 문서를 등서하는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營總』에 수록된 膽書式과 膽錄의 비교

『營總』의 膽書式은 各項定式에 ‘備局件啓錄膽式’과 ‘備局關牒膽式’으로 수록되어 있다. 비국건계록등식은 書狀膽書式과 狀啓膽書式으로 구분하였고, 비국관첩등식은 關文과 牒문을 등서하는 방식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膽式들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 지침들은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국왕에게 올리거나 비변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책자에 등서하는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즉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경상도관찰사나 변장, 수령과 주고받은 문서들이 아니라 국왕에게 올리거나 비변사와 주고받은 문서의 등서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다.

등록에 등서되는 대상인 문서는 법전에 문서의 양식이 규정되어 있다. 문서들은

26) 『弘齋全書』 165책 日得錄 5 文學 5

“五經百選將鏤板 命鑄字所 關嶺營擇啓書吏之善書者五人 給舖馬起送 使之繕寫入刊 教曰 近日書體之浮薄荒率 不惟士夫爲然 胥吏簿狀之字 亦駸駸效尤 不中式令 是豈但渠輩之咎 亦其所日見而濡染者 有以致之耳 嶺營啓書之吏 獨守古法 不爲流俗所移 良足嘉尚 其字畫典實 眞樸 自成一體 予惟是之取也 以世人觀之 必詆其拙滯少奇 質鈍無妍 而今必付之剗削 以壽其傳者 將以示所好之在此而不在彼也 蓋有微意寓於其間也”.

각각 일정한 양식을 갖고 있는데, 특정 문서에서 나타나는 투식적인 요소와 관원의 署名, 관서의 官印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문서마다 달리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관서에서는 문서를 등록에 등서하기 위해 어떠한 원칙들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등록에 등서되기 전의 원 문서와 『영총』의 등서 지침, 그리고 등록에 등서된 문서 내용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원 문서는 대부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經國大典』, 『典律通補』 등에 규정된 문서 양식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경상우병사가 국왕에게 올린 문서

먼저 備局件啓錄膾式은 ‘書狀膾書式’과 ‘狀啓膾書式’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상우병영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총』의 지침은 이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서만 등서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영총』의 서장등서식과 장계등서식만 보았을 때 어떤 문서를 등서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전에 규정된 문서 양식과의 비교를 통해 등서한 문서를 판별해야 하는데, 『경국대전』부터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법전에는 지방관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장에서 언급한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에는 단지 ‘큰 일[大事]에 啓本을 쓰고, 작은 일[小事]에 啓目을 쓰는데 지방에서는 계목을 쓰지 않는다.’는 조항만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방관이 국왕에게 올린 문서의 양식은 『전율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율통보』 別編의 本朝文字式을 보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로 京司啓本式, 啓目式, 無啓目單子式, 草記式, 外方啓本式, 狀啓式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지방관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은 외방계본식과 장계식이다. 『전율통보』의 문서식과 『영총』의 등서 지침, 그리고 등록에 등서된 문서를 함께 비교해보면 『영총』의 서장등서식은 『전율통보』의 장계식, 『영총』의 장계등서식은 『전율통보』의 외방계본식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 등록에 등서된 문서와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서장등서식 앞에는 備局件啓錄膾式이라는 제목 다음에 ‘병마절도사 누구 때 장

계 등록[兵使某等諱時狀啓謄錄]이라 쓰여 있다. 이 내용은 첫 줄에 쓰는데 한 글자를 낮추어 쓴다[此則初行書之 而下一字書之次]라 되어 있다.²⁷⁾ 『경상우병영계록』을 보면 새로운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부임한 이후 첫 문서를 등서하기 전 이 내용을 쓰고 있다. 즉, 문서에 수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경상우병영계록』에서 어떤 병마절도사가 재임할 때 작성한 문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에 해당한다.

먼저 서장등서식을 보면 첫 줄에 ‘承政院開坼’을 쓴다. 그리고 줄을 바꾸어 ‘長啣’을 갖추어 쓰고, 臣과 姓을 쓴 후 한 칸을 띄우는데 이름[諱]은 쓰지 않았다. 여기서 ‘啣’은 한자를 달리 써서 ‘銜’이라고도 한다.²⁸⁾ 『攷事新書』를 참고하면 長銜은 兼職도 쓰는 것이고, 單銜은 結직을 쓰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다.²⁹⁾ 이후 내용은 줄을 바꾸어 ‘원 문서의 내용[元辭]을 행 별로 쓴다.’라고 되어 있다.

『영총』의 서장등서식은 문서의 내용을 쓰는 지침에 대해 소략하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승정원개탁을 쓰고 관직명을 모두 갖추어 쓰는 장함의 형식을 지침으로 삼았다. 이렇게 작성하는 문서를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서 확인해보면 장계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전율통보』의 장계식은 겹면 오른쪽에 승정원개탁을 쓰고 습衿한 곳에 ‘謹封’을 쓴다. 그리고 具銜과 臣, 姓, 署名을 再帖의 마지막 줄의 平行에서 低字하고 내용[某事云云]을 쓴다. 내용을 다 쓰면 ‘하옵는 일인만큼[爲白臥乎事是良尔]’ 또는 ‘하옵도록[爲白只爲]’이라는 이두를 쓰고 ‘이러한 까닭으로 계를 올립니다[詮次善啓向教是事]’라는 장계의 結語라 할 수 있는 투식을 써서 본문을 마무리한다. 이 때 ‘某事’의 ‘某’와 그리고 본문을 쓴 후 기입하는 연호는 줄을 바꾸어 平行에 기입하고, ‘善啓’의 ‘善’은 平行보다 한 칸 위로 올려 쓴 二行에 기입하였다.³⁰⁾

27) 『營總』 乾, 各項定式

“備局件 啓錄謄式

兵使某等諱時狀啓謄錄【此則初行書之 而下一字書之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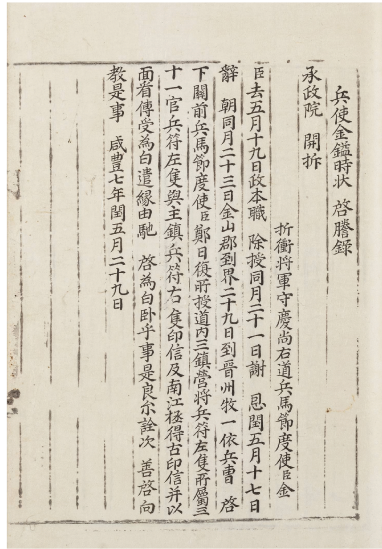
28) 김건우, 앞의 논문, 224면.

29) 『攷事新書』 卷5 用文字式, “書兼職曰長銜 不書兼職曰單銜”.

30)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狀啓式

“狀啓式【周帖 ○外面右邊 書承政院開[間字]折 合襟處 臣署名謹[間字]封 連幅後面臣署名

『전율통보』의 장계식에서 걸면에 승정원개탁을 쓰고 두 번째 첩[再帖]의 첫 줄에 具銜을 쓰는 것은 『영총』의 서장등서식의 앞부분을 작성하는 지침과 유사하다. 또한 『영총』의 서장등서식에서 문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 문서의 내용 [元辭]을 행 별로 쓴다.’라고 소략하게 설명되어있는데, 이를 『경상우병영계록』에 장계를 등서한 사례와 비교해보면 『전율통보』의 장계식과 유사한 점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영총』의 서장등서식은 장계를 등서하는 지침으로 생각된다. <그림 3>은 『전율통보』의 장계식과 『영총』의 서장등서식, 그리고 1857년(합풍 7) 윤5월 29일 경상우병영에서 국왕에게 올린 장계를 등서한 『경상우병영계록』이다.

<p style="text-align: center;">承政院開拆</p> <p style="text-align: center;">元辭書行</p> <p style="text-align: center;">某事云云爲白臥乎事是良尔或爲白只爲詮次 善啓向教是事 年號幾年某月某日</p> <p style="text-align: right;">具銜臣姓署名</p>	<p style="text-align: center;">承政院開拆</p> <p style="text-align: center;">元辭書行</p> <p style="text-align: center;">具長啣臣姓</p>	
<p>『典律通補』 狀啓式</p>	<p>『營總』 書狀騰書式</p>	<p>『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6a</p>

<그림 3> 『전율통보』 장계식과 『영총』 서장등서식, 『경상우병영계록』에 등서된 장계의 비교

○東宮狀達同 而善啓稱善達】

具【再帖末行平行低字】銜臣姓署名某【平行】事云云爲白臥乎事是良尔【或爲白只爲】詮次善【二行】啓向教是事 年【平行】號幾年 某月 某日”.

『경상우병영계록』을 기준으로 <그림 3>을 검토해보면, 먼저 첫 줄에 한 글자 낮추어 兵使金鑑時狀啓騰錄을 쓰고 다음 줄에 승정원개탁을 썼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 金鑑은 1857년 5월 19일 임명되었다.³¹⁾ 김일은 이후 국왕에게 謝恩과 辭朝를 한 후 경상우병영이 있는 淸州牧에 도착하여 전임 경상우도병마절도사 鄭日復이 사용하던 兵符와 印信 등을 인계받았다. 즉, 이 문서는 지방관이 교체되어 부임한 직후 작성한 문서를 국왕에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승정원개탁부터 작성하지 않고, 문서를 등서하기 전 병사 누구 때의 장계등록인지를 기입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경상우병영계록』의 셋째 줄을 보면 자급과 관직, 臣, 姓을 기입하였다. 『전율통보』 장계식의 具銜과 臣, 姓, 署名은 『영충』 서장등서식에서 具長啣, 臣, 姓으로 바뀌었다. 즉, 署名은 등록에 옮기지 않은 것이다. 또한 具銜 또는 具長啣을 써야 할 곳에 金鑑의 자급인 折衝將軍과 본직인 경상우도병마절도사를 아래에서 한 글자를 띄어 기입하였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앞의 守는 行守法에 따라 자급인 정3품 당상관 절충장군이 관직인 중2품 경상우도병마절도사보다 낮기 때문에 기입한 것이다. 따라서 『영충』 서장등서식의 具長啣은 자급과 관직을 함께 등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율통보』 장계식에 규정된 장계의 結語 투식[詮次善啓向教是事]은 등록에 그대로 등서하였다. 다만 ‘善啓’의 ‘善’은 改行하여 二行에 기입하지 않고 한 글자를 띄우고 등서하여 敬語임을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율통보』 장계식의 작성연월일은 줄을 바꾸어 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영충』 서장등서식은 관련 지침이 없다. 『경상우병영계록』에는 문서 내용의 말미에 한 글자를 띄운 후 연이어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장계등서식은 ‘경상우도병마절도사 臣 姓名이 삼가 상고할 일로[또는 포폄할 일로] 아뢰입니다[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姓諱 謹啓爲[相考事褒貶事]]’라 문서

31) 『承政院日記』 2591책, 철종 8년(1857) 5월 19일 기사

“○ 兵批 判書趙秉燮進 兵批啓曰 忠清水使 今當差出 而擬望之人乏少 他道防禦使竝擬 何如 傳曰 允 以姜時永爲知事 崔昉爲同知 李亨夏爲僉知 趙義謙爲宣傳官 李重榮爲內禁將 趙謙熙·趙源翼·卓鍾淳·崔東日·崔宗武爲五衛將 李鎮星爲訓練主簿 趙行林爲武兼 李憲環爲部將 金鑑爲慶尙右兵使 蔡東健爲忠清水使 彭啓憲爲南陽監牧官”.

의 起頭를 쓰고 내용[云云]을 연이어 쓰는 간단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³²⁾ 이렇게 작성하는 문서를 마찬가지로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서 확인해보면 외방계본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전율통보』의 외방계본식은 初帖의 첫 줄에 單銜과 臣, 姓名, 삼가[謹]를 쓴다. 그리고 줄을 바꾸어 ‘어떠한 일로 아뢰입니다[啓爲某事]’를 쓰고 내용[云云]을 쓴다. 내용을 다 쓰면 ‘하옵도록[爲白只爲]’ 또는 ‘하옵고[爲白遣]’이라는 이두를 쓰고 ‘삼가 갖추어 계를 아뢰입니다[謹具啓聞]’라는 외방계본의 結語 투식을 쓴다. 마지막으로 작성연월일을 쓴 후 단함과 臣, 姓, 署名을 쓴다. 이 때 문서의 始面에 쓰는 단함과 연호는 平行에 기입하고 啓와 聞은 二行에 기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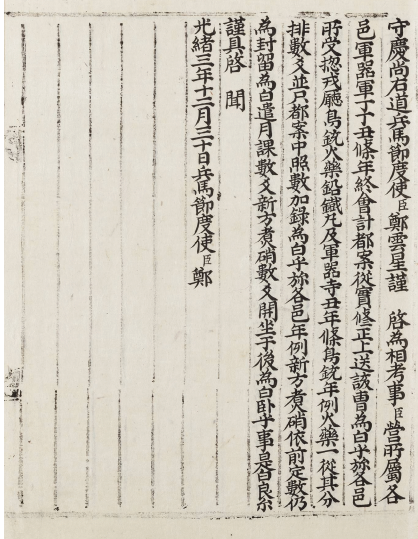
『전율통보』의 외방계본식에서 ‘삼가 어떠한 일로 아뢰입니다[謹啓爲某事]’라는 문서의 작성 목적에 주목하여 보면 『영충』의 장계등서식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영충』의 장계등서식은 『전율통보』의 외방계본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등서하는 지침으로 판단된다. 이는 마찬가지로 『경상우병영계록』에 외방계본을 등서한 사례와 함께 검토하면 잘 드러난다. <그림 4>는 『전율통보』의 외방계본식과 『영충』의 장계등서식, 그리고 1877년(광서 3) 12월 30일 경상우병영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를 등서한 『경상우병영계록』이다.

『경상우병영계록』을 기준으로 <그림 4>를 검토해보면,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 臣鄭雲星謹啓爲相考事로 시작한다. 따라서 臣鄭雲星 앞에 기입한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는 본직만 기입한 單銜의 형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臣을 쓰고 문서를 올린 경상우도병마절도사의 성명인 鄭雲星을 기입하였다. 정운성 다음에 쓴 謹啓는 『전율통보』의 외방계본식처럼 줄을 바꾸어 쓰지 않았고 『영충』의 장계등서식처럼 연서하였는데, 대신 啓자 앞에 한 글자를 띄어 敬語임을 표시하였다.

32) 『營總』 乾, 各項定式

“狀啓膳書式

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姓諱 謹啓爲【相考事褒貶事】云云”.

<p>單銜臣姓名謹 啓爲某事云云爲白只爲或爲白遣謹具啓 聞 年號印幾年某月某日單銜臣姓名</p>	<p>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姓謹謹啓爲相考事褒貶事云云</p>	
<p>『典律通補』 外方啓本式</p>	<p>『營總』 狀啓騰書式</p>	<p>『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3책 28a</p>

〈그림 4〉 『전율통보』 외방계본식과 『영총』 장계등서식, 『경상우병영계록』에 등서된 외방계본의 비교

또한 『전율통보』 외방계본식에 규정된 외방계본의 結語 투식[謹具啓聞]은 등록에 그대로 등서하였다. 다만 ‘啓聞’의 ‘聞’은 改行하여 二行에 기입하지 않고 한 글자를 띄우고 등서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율통보』 외방계본식의 작성연월일은 줄을 바꾸어 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영총』 장계등서식은 관련 지침이 없다. 『경상우병영계록』은 『전율통보』 외방계본식처럼 줄을 바꾸어 작성하였다. 작성연월일은 장계와 외방계본을 등서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림 3〉과 〈그림 4〉의 『경상우병영계록』을 비교해보면 장계를 등서할 때는 연서하였지만, 외방계본을 등서할 때는 줄을 바꾸어 썼다. 이 작성연월일을 등록에 등서하는 지침도 『영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계등서식(외방계본)의 중국 연호는 모두 平行에 쓴다고 되어 있고, 서장등서식(장계)의 중국 연호는 원 문서의 내용[元辭] 아래에

한 글자 띄어 쓰고, 등록의 질차는 장계등서식(외방계본)의 예를 참고하여 상호 참조하여 거행한다³³⁾고 되어 있다. 즉, 등록에 작성연월일을 기입할 때 외방계본은 줄을 바꾸어 쓰고 장계는 한 글자를 띄우고 쓰는 것이다.

한편 『영총』의 장계등서식 뒤에는 문서를 등서할 때 지켜야 할 공통적인 지침을 몇 가지 기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작성연월일을 등서하는 방식을 포함한 7가지의 지침이 있는데, 이를 보면 啓, 聞, 稟 등 3글자와 傳敎, 朝令, 廟堂으로 하여금 분부한 것 등의 말 및 이외의 여러 가지들은 極行이나 平行이든 다 한 글자를 띄어 쓴다는 지침이 있다.³⁴⁾ 즉, 문서에서는 敬語로 존중해야 할 글자들이 있으면 줄을 바꾸고 기준이 되는 평행에서 글자를 높여 써야 하지만, 등록에서는 이같이 줄을 바꾸어 쓰지 않고 連書하되 한 글자를 띄어쓰는 것으로 敬語를 표시한 것이다.

또한 番上과 褒貶, 연말에 올리는 문서와 관련된 등서 지침도 수록되어 있다. ‘番上狀啓는 아무 번 아무 고을 驥·步·忠 등을 별도의 행에 1자 낮추어서 아래로 죽 이어 쓰고[連書], 옆으로 별려 쓰지[列書] 양도록 한다.’, ‘褒貶狀啓는 세 鎭의 營將을 세 줄으로 나누어 원 狀啓의 행에서 한 글자 낮추어 쓰고, 각각 영장의 이름 아래 題目과 上·中·下 평가를 조금씩 띄어 적어넣는다. 虞侯와 審藥도 이에 따라 列書한다.’, ‘여러 將官, 旅帥, 隊正의 포폄장계, 奇步布의 上納에 대한 연말[年終] 장계 및 軍器와 軍丁의 보충에 대한 장계는 다만 원 문서의 내용과 연월만 쓰고, 후록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등록한 일이 없으니 이러한 예를 살펴 거행한다.’ 등의 내용이다.³⁵⁾

33) 『營總』 乾, 各項定式

“一 狀啓大年號 一併平行書之次

一 書狀大年號 元辭下 間一字書之 而謄錄節次 旁照狀啓例 參互舉行是齊”.

34) 『營總』 乾, 各項定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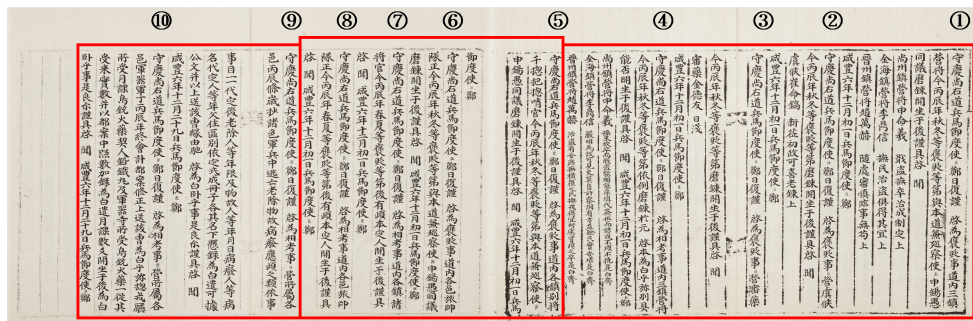
“一 啓稟聞等三字 與傳敎朝令廟堂分付等語 及此外許多之屬 毋論極行與平行 一通間一字書之次”.

35) 『營總』 乾, 各項定式

“一 番上狀啓 則某番某邑奇步忠等乙 別行下一字連書 而勿爲列書次

一 褒貶狀啓 則三鎭營將 分三行 此元啓行 下一字書 各其名下 題目及上中下 稍間書填 虞

이 중 『영충』에서 언급한 포폄장계와 연말장계 등은 『경상우병영계록』에 문서가 등서되어 있어 등서하는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5>는 1857년(함풍 7) 12월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국왕에게 올린 외방계본을 『경상우병영계록』에 등서한 사례이다. 등서된 문서가 '경상우도병마절도사 臣 姓名이 삼가 상고할 일로 또는 포폄할 일로 아뢰입니다'로 시작하고 '삼가 갖추어 계를 아뢰입니다[謹具啓聞]'라는 結語 투식을 썼기 때문에 외방계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방계본의 작성연월일은 줄을 바꾸어 작성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총 10건의 외방계본을 올렸는데, 이를 문서가 시작하는 부분에 숫자로 표시하였고, 이 10건의 계본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어 박스로 묶어 표시하였다.



<그림 5> 『경상우병영계록』 중 1857년 12월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국왕에게 올린 외방계본

먼저 ①부터 ④는 포폄의 결과를 올린 문서를 등서한 것이다. ①은 尙州鎭營將, 金海鎭營將, 晉州鎭營將의 포폄,³⁶⁾ ②는 虞候의 포폄,³⁷⁾ ③은 審藥의 포폄³⁸⁾을 실

例 審藥 亦依此例書之次

一 諸將官旅帥隊正褒貶狀啓 奇步上納年終狀啓 及軍器軍丁歲抄狀啓 則只書元辭及年月 而後錄則數多故 無謄書之事 考例舉行是齊”

36)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1a, 1856년 12월 1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褒貶事 道內三鎭營將 今丙辰年秋冬等褒貶等第 與本道兼巡察使臣申錫愚 同議磨鍊 開坐于後 謹具啓聞

시한 후 결과를 각각 문서로 만들어 올린 것을 등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들의 후록을 보면 ‘원 狀啓의 행에서 한 글자 낮추어 쓰고, 각각 영장의 이름 아래 題目과 上·中·下 평가를 조금씩 띄어 적어넣는다.’는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 즉, 원 장계의 행보다 한 글자 낮추어 등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④는 ①번 문서에서 보고한 영장들의 포폄 결과와는 별개로 포폄의 이유가 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별도로 갖추어 올린 문서를 등서한 것이다.³⁹⁾ 이는 정조 대 ‘앞으로 고과할 때 영장이 적임자인지 수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치적을 後錄하여 狀聞하고, 그 밖의 영장들에 대해서도 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별도로 갖추어 장문하라.’⁴⁰⁾

尙州鎮營將申命義 戢盜撫卒 治成制定 上
 金海鎮營將李鼎信 撫民治盜 俱得其宜 上
 晉州鎮營將趙萬赫 隨處審慎 臨事無苟 上
 咸豐六年十二月初一日
 兵馬節度使臣鄭”.

37)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1a, 1856년 12월 1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褒貶事 臣營虞候 今丙辰年秋冬等褒貶等第 磨鍊開坐于後 謹具啓聞
 虞候崔命鎬 新莅初政 可喜老鍊 上
 咸豐六年十二月初一日
 兵馬節度使臣鄭”.

38)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1a-11b, 1856년 12월 1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褒貶事 臣營審藥 今丙辰年秋冬等褒貶等第 磨鍊開坐于後 謹具啓聞
 審藥金德友 日淺
 咸豐六年十二月初一日
 兵馬節度使臣鄭”.

39)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1b, 1856년 12월 1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相考事 道內三鎮營將 今丙辰年秋冬等褒貶等第 依例磨鍊於元啓本爲白乎跡 別具能否 開坐于後 謹具啓聞
 咸豐六年十二月初一日
 兵馬節度使臣鄭
 尙州鎮營將申命義 操束校卒 而戢盜能剛能柔 填代簽伍 而詰或不煩不擾是白齊
 金海鎮營將李鼎信 嚴明爲政 可見吏莫售奸 察誦有方 益驗民實安堵是白齊
 晉州鎮營將趙萬赫 治盜有安 庶撫橫罹之民 撫戎得宜 何慮冒頭之卒是白齊”.

는 지시가 있어 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⑤는 각 鎭의 別將·千摠·把摠·哨官의 포폄,⁴¹⁾ ⑥은 각 邑의 旅帥·隊正에 대한 포폄⁴²⁾이고, ⑦은 봄여름의 포폄 이후 각 鎭의 別將·千摠·把摠·哨官⁴³⁾에서 빠진 사람을 대신하여 채워넣은 사람을 후록한 문서, ⑧은 각 邑의 邑正·대정⁴⁴⁾에서 빠진 사람을 대신하여 채워넣은 사람을 후록한 문서를 등서한 것이다. ⑤부터 ⑧까지는 문서의 본문 내용을 보면 ‘후록에 낱낱이 열거하였다[開坐于後]’는 말이 있어 원 문서에 후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등

40) 『承政院日記』 1802책, 정조 22년(1798) 12월 24일 계축

“○ 傳于李肇源曰 以今日決獄觀之 營將之不得其人 管下校卒 虐害平民 該營將雖命拿處 而甲寅失捕之穿窬 竟即捕捉者 亦可謂不可無營將 則東濕與戢詰之竝行不悖 又莫如擇人 今政新除營將中當爲邊地之履歷 而再經營將者 令兵判爲先抄出草記 來頭考績之時 令帥臣別具治績 後錄狀聞 則仍用邊地履歷 不能者 依故失馬例降資 其外營將等 亦爲別具能否狀聞 當有勸懲之舉 來頭繡衣之行 依守令例 拔例按廉 俾爲着念之意嚴飭 此傳教書籤付官案 以爲常日之地 亦令兵判知悉”.

41)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1b-12a, 1856년 12월 1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喪貶事 道內各鎭別將·千摠·把摠·哨官 今丙辰年秋冬等喪貶等第 與本道兼巡察使臣申錫愚 同議磨鍊 開坐于後 謹具啓聞
咸豐六年十二月初一日
兵馬節度使臣鄭”.

42)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2a, 1856년 12월 1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喪貶事 道內各邑旅帥·隊正 今丙辰年秋冬等喪貶等第 與本道兼巡察使臣申錫愚 同議磨鍊 開坐于後 謹具啓聞
咸豐六年十二月初一日
兵馬節度使臣鄭”.

43)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2a, 1856년 12월 1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相考事 道內各鎭諸將官 今丙辰年春夏等喪貶等第後 有頗本定人 開坐于後 謹具啓聞
咸豐六年十二月初一日
兵馬節度使臣鄭”.

44)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2a, 1856년 12월 1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相考事 道內各邑旅帥·隊正 今丙辰年春夏等喪貶等第後 有頗本定人 開坐于後 謹具啓聞
咸豐六年十二月初一日
兵馬節度使臣鄭”.

록에 등서할 때는 이 후록을 등서하지 않았다.

⑨는 軍兵의 代定과 관련된 문서,⁴⁵⁾ ⑩은 軍器·軍丁과 관련된 연말 보고⁴⁶⁾이다. 따라서 ‘여러 將官, 旅帥, 隊正의 포폄장계, 奇步布의 上納에 대한 연말[年終]장계 및 軍器와 軍丁의 보충에 대한 장계는 다만 원 문서의 내용과 연월만 쓰고, 후록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등록한 일이 없으니 이러한 예를 살펴 거행한다.’는 등서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경상우병영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가 등록으로 옮겨지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등록에 등서된 원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전율통보』의 문서식을 제시하여 문서의 원형을 검토하였고, 이를 경상우병영에서 작성한 『영총』의 등서 지침 및 『경상우병영계록』에 등서된 문서를 비교 검토하였다. 즉, 문서 양식과 등서 지침, 등서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문서에서 등록으로 옮기면서 어떤 내용에 출입이 있는지 그리고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영총』의 등서식에는 지침이 없었지만, 결어의 투식을 『경상우병영계록』으로 옮기면서 이를 등서하여 문서의 유형을 판별할 수 있었다. 대체로 『영총』의 지침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나 포폄의 후록을 원 장계의 행보다 한 글자 낮추어 등서하지 않거나, 외방계본의 작성연월일을 줄을 바꾸어 기입하지 않는 경우 등 등서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 절에서 경상우병영과 비변사가 주고받은 문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45)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2a-12b, 1856년 12월 29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相考事 臣營所屬 各邑丙辰條 歲抄諸色軍兵中 逃亡·老除·物故·病廢 應頤之類 依事事日 一一代定後 老除人等年限及物故人等年月日 病廢人等病名 代定人等年父住區別 依定式成册子 各其名下懸錄爲白遣 可據公文 并以上送該曹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矣 謹具啓聞

咸豐六年十二月二十九日

兵馬節度使臣鄭”.

46)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1책 12b, 1856년 12월 29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臣鄭日復謹啓爲相考事 臣營所屬 各邑軍器·軍丁 丙辰年終會計都案 修正上送該曹爲白乎跡 摠戎廳所受月課鳥銃·火藥 契人鉛鐵丸及軍器寺所受鳥銃·火藥 一從其受來實數 并以都案中 照數加錄爲白遣 月課數爰 開坐于後爲白臥乎事是良矣 謹具啓聞

咸豐六年十二月二十九日

兵馬節度使臣鄭”.

2) 경상우병사가 비변사와 주고받은 문서

다음으로 『영총』의 備局關牒膾式을 보면 관문과 첩정을 등서하는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장계(서장등서식), 외방계본(장계등서식)과 비국관첩등식의 첩정은 모두 경상우병영에서 발송한 문서이지만, 관문은 경상우병영에서 접수한 문서를 등서하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문과 첩정의 문서 양식은 유사한 점이 있다. 『경국대전』 平關式과 牒呈式을 참고하면, 먼저 문서의 起頭에 발급 관서[某衙門]와 작성 목적[爲某事]을 쓰는데, 문서의 기두를 쓰는 방식은 외방계본과도 유사하다. 그리고 내용을 쓴 다음 문서 양식에 맞는 結語 투식을 쓴다. 곁어 투식은 문서의 발급 관서를 기준으로 접수 관서의 품계가 높은지 낮은지 동등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접수 관서를 쓰고 작성연월일, 문서를 작성한 관서의 官印과 관원의 결재 등을 남긴다.⁴⁷⁾ 내용 이후는 관문과 첩정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지만, 발급 관서와 작성 목적은 관문과 첩정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먼저 『영총』의 비국관첩등식 중 關은 ‘병마절도사 누구 때 비변사에서 보내온 관문 등록[兵使某等諱時司來關牒錄]’을 쓰고 줄을 바꾸어 연월일과 到付를 쓴다. 즉 여기서의 연월일은 경상우병영에서 문서를 접수한 날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줄을 바꾸어 관문의 발급 관서[備邊司]와 작성 목적[爲相考事], 내용[云云]을 쓰고 문서의 작성연월일을 연이어 쓰는데, 문서의 작성 연도는 중국 연호를 기입하는 형식이다. 다음으로 牒呈은 ‘병마절도사 누구 때 첩보 등록[兵使某等諱時牒報膾錄]’을 쓰고 줄을 바꾸어 첩정의 작성 목적[爲上送事 또는 爲牒報事]과 내용[云云]을 쓰고 문서의 작성연월일을 연이어 쓰는 형식이다.⁴⁸⁾ <그림 6>은

47) 김완호, 2020 「조선 후기 社稷署의 膾錄 작성과 문서 행정 -장서각 소장 『社稷署膾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6, 326면.

48) 『營總』 乾, 各項定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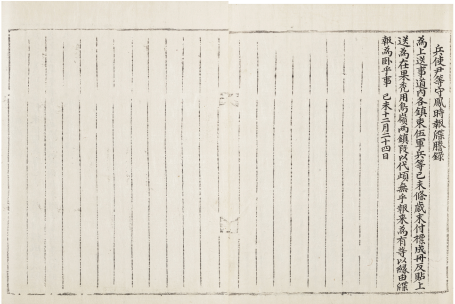
“備局關牒膾式

兵使某等諱時司來關牒錄【此則初問書之 而下一字書之次】

某年某月某日到付

備邊司爲相考事 云云 大年號月日

앞서 설명한 『경국대전』의 문서식과 『영총』의 비국관첩등식을 도식화하고, 1859년 (합풍 9) 경상우도병마절도사 尹守鳳의 재임 때 작성한 문서를 등서한 『경상우병영관첩』을 예시한 것이다.

<p>〔關〕某職押 某職押 某衙門 年(卍)月 日 某</p>	<p>兵使某等諱時 司來關牒錄 某年某月某日到付 備邊司爲相考事云云大年號月日</p>	<p>某衙門爲某事云云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某衙門 年(卍)月 日 某職某押 某職某押 某</p>	<p>兵使某等諱時牒報牒錄 爲〔上送牒報〕事云云某年月日</p>
<p>『經國大典』 平關式</p>	<p>『營總』 備局關牒牒式 中 關</p>	<p>『經國大典』 牒呈式</p>	<p>『營總』 備局關牒牒式 中 牒呈</p>
			
<p>『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중 來關牒錄⁴⁹⁾</p>	<p>『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중 報牒牒錄⁵⁰⁾</p>		

〈그림 6〉 『경국대전』 평관식 · 첩정식과 『영총』 비국관첩등식, 『경상우병영관첩』에 등서된 관문 · 첩정

兵使某等諱時牒報牒錄【此則初間書之 而下一字書之次】
爲【上送牒報】事 云云 某年月 日”.

49)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60a, 1859년 9월 13일
“兵使尹等守鳳時司來關牒錄

먼저 『경상우병영관첩』의 내관등록부터 검토하면, 兵使尹等守鳳時司來關謄錄을 쓰고 줄을 바꾸어 문서를 경상우병영에서 접수한 날짜로 보이는 기미 9월 13일과 접수했다는 의미의 도부를 썼다. 그리고 발급 관서[備邊司]와 작성 목적[爲相考事], 내용, 문서의 작성연월일인 함풍 9년 8월 19일을 연이어 썼다.

다음으로 『경상우병영관첩』의 보첩등록을 보면, 兵使尹等守鳳時報牒謄錄을 쓰고 줄을 바꾸어 작성 목적[爲上送事], 내용, 문서의 작성연월일인 기미 12월 24일을 썼다. 등서식에서 첩보등록이라 쓰는 지침과는 달리 보첩등록이라고 썼는데, 보첩이나 첩보 모두 보고 문서라는 의미이다. 또한 관서에서 사용하는 문서들은 모두 중국연호를 사용하는데, 경상우병영에서 첩정을 등록에 등서할 때는 干支로 바꾸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내관등록과 보첩등록은 공통적으로 ‘병마절도사 누구 때 비변사에서 보내온 관문 등록[兵使某等諱時司來關謄錄]과 ‘병마절도사 누구 때 첩보 등록[兵使某等諱時牒報謄錄]’을 첫 행에 한 글자 낮추어 쓴다[此則初行書之 而下一字書之次]는 지침이 있다.⁵¹⁾ 이는 앞 절의 비국건계록등식에서 ‘병마절도사 누구 때 장계 등록[兵使某等諱時狀啓謄錄]’을 한 글자 낮추어 쓴다는 지침과 동일한 것으로, 『경상우병영관첩』에서도 이 지침이 반영되어 있다.⁵²⁾

己未九月十三日到付

備邊司爲相考事 本司書吏所受本營朔錢來庚申十三朔條 辛酉十二朔條 依戊午年例 必趁今十一月內 都聚上送宜當向事 咸豐九年八月十九日”.

50)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68a, 1859년 12월 24일

“兵使尹等守鳳時報牒謄錄

爲上送事 道內各鎮東伍軍兵等 己未條歲末付標成册 反貼上送爲在果 禿用·鳥嶺兩鎮段 以代頗無乎報來爲有等以 緣由牒報爲臥乎事 己未十二月二十四日”.

51) 병마절도사 누구 때 비변사에서 보내온 관문 등록[兵使某等諱時司來關謄錄]을 쓸 때 ‘司’ 대신 ‘府’를 쓴 경우도 있다. 여기의 ‘府’는 議政府를 의미하는데, 비변사는 고종 대 의정부로 합속되어 합설 의정부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합설 의정부에 대해서는 홍순민, 2015 「고종 초년 합설 의정부의 직무와 위상」, 『역사와 현실』 95, 31-73면 : 이근호, 2015 「합설 의정부의 “문부(文簿) 거행(舉行)” 체계」, 『역사와 현실』 95, 111-145면 등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52) <그림>에서 예시한 윤수봉 때 등록은 내관등록 뒤에 보첩등록을 장책하였다. 하지만 내

관문과 첩정은 앞 절에서 소개한 경상우도병마절도사의 재임 때 작성한 장계와 외방계본을 합쳐 장계등록으로 만든 것과는 달리 관문과 첩정을 각각 내관등록과 첩보등록으로 만들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문은 비변사에서 발송한 문서이고, 첩정은 경상우병영에서 발송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별 건의 등록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경상우병영에서 접수한 문서와 발송한 문서를 구분해서 보면 이 두 부류를 등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의 起頭에 쓰는 발급 관서의 유무인데, 비변사에서 발송한 문서인 관문은 발급 관서와 작성 목적을 함께 등서하였고, 경상우병영에서 발송한 문서인 첩정은 작성 목적만 등서하는 것이다. 즉 등록을 작성한 경상우병영을 기준으로 보면 문서와 등록을 작성한 관서가 같으면 등록에 등서하는 문서의 발급 관서를 기입하지 않았고, 문서와 등록을 작성한 관서가 다르면 등록에 등서하는 문서의 발급 관서를 기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관서에서 발송한 문서는 등록에 기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접수한 문서는 어느 관서에서 보내온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 절에서 언급한 장계와 외방계본은 경상우병영에서 작성한 문서이기 는 하지만 국왕에게 올린 문서이기 때문에 첩정처럼 작성 관서를 생략하지 않고 문서의 투식까지 최대한 갖추어 등록에 등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상우병영관첩』을 보면 『영총』의 등서 지침을 항상 준수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상우병영에서 접수한 관문의 작성연월일을 간지로 기입한 경우,⁵³⁾ 내관등록을 ‘關臚’이라 기입한 경우,⁵⁴⁾ 첩정의 작성연월일을 먼저 쓴 후 작성 목적과 내용을 쓴 경우,⁵⁵⁾ 첩정 기두의 발급 관서를 기입한 경우⁵⁶⁾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경상우병영에서는 『영총』이라는 등록의 작성 지침이

관등록과 보첩등록의 내용을 등록에 장책하는 순서는 『경상우병영관첩』을 보면 병마절도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53)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25a, 1855년 7월 29일.

54)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28a.

55)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79a, 1861년 8월 초1일.

56)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9a-25b.

있었지만, 臚書者에 따라 실제 등서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작성한 등록과 함께 비교해보면 그 편차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를 기약하겠다.

지금까지 경상우병영에서 비변사와 주고받은 문서가 등록으로 옮겨지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1절과 마찬가지로 문서 양식과 등서 지침, 등서된 사례를 검토하여 문서에서 등록으로 옮겨질 때 내용의 출입이 있는지 그리고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관문과 첩정은 각각을 등록으로 만들었는데, 문서 기두의 양식은 같지만 경상우병영에서 접수한 문서와 발송한 문서를 구분하기 위해 발송한 문서를 등서할 때 발급 관서를 쓰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은 비변사에 상납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였지만, 등서 방식을 보면 경상우병영의 관점에서 작성하였다.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을 포함하여 지방관이 국왕에게 올린 문서나 지방관이 비변사 또는 의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를 수록한 등록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⁵⁷⁾ 경상우병영 이외의 다른 지방관들이 작성한 등록들도 『영총』의 등서 지침과 『경상우병영계록』 및 『경상우병영관첩』의 문서 등서 방식을 적용하여 검토하면 다른 지방관의 사례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4. 경상우병영의 臚錄 보관 및 비변사 상납

앞 장에서 검토하였듯이 『慶尙右兵營啓錄』과 『慶尙右兵營關牒』은 경상우병영에서 비변사에 상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등록이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경상우병영계록』 및 『경상우병영관첩』과 동일한 등록을 경상우병

57) 지방관이 국왕에게 올린 문서와 지방관이 비변사 또는 의정부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등서한 등록의 총 현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영에서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등록은 작성한 관서에서 문서를 주고받은 이후 행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854년 비변사의 서책을 보관하던 창고에서 불이 나서 지방관과 주고받은 문서들이 불에 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비변사에서 여러 지방관들에게 문서와 책자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을 검토해보면 당시 지방관의 문서 및 등록 보관 상황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1854년(갑인년) 10월 25일 비변사의 서리 집무실 근처에 불이 났다는 비변사의 보고가 『承政院日記』와 『備邊司謄錄』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⁵⁸⁾ 이후 불이 났을 당시 입직 낭청의 처벌 및 건물의 중건과 관련된 내용만 확인되고, 문서의 피해 현황이나 사후 대책과 같은 언급은 확인되지 않아 당시 정황을 유추하기 어렵다.

그런데 『경상우병영관첩』에는 이 때 비변사와 경상우병영이 주고받은 문서가 등서되어 있다. 1854년 10월 27일 비변사에서 경상우병사에게 ‘임자년(1852) 및 계축년(1853)에 비변사로 보낸 각종 성책과 금년(1854)에 비변사로 보낸 각종 성책, 을사년(1845)부터 올해까지의 關報牒, 重記 1등을 올려 보내달라.’는 문서를 보냈다.⁵⁹⁾ 이 때 비변사는 경상우병영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관들에게 문서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월 12일 문서를 접수한 경상우병영은 15일 뒤인 11월 27일 비변사에 문서를 보내 ‘계록 및 각종 성책은 원본으로 올려 보내겠지만, 관보첩은 다른 관서와 주고

58) 『承政院日記』 2560책, 철종 5년(1854) 10월 25일 경신

“○ 備邊司啓曰 本司書吏所接長房失火根因 今方鉤覈 員役以下從輕重酌處計料 而雖以入直郎廳言之 當時不能檢飭之失 在所難免 令該府拿問勘處 何如 傳曰 允”.

59)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5a, 1854년 11월 12일

“甲寅十一月十二日 到付

備邊司爲相考事 本司書吏入接處所 偶然失火 本營去來文簿 則雖多搜出 而亦不無入於回錄及年條間斷者 今方較準釐正是如乎 凡屬司上文書 見在於本營件 必以原本 依後錄即速堅封輪上於本司 以爲互相憑考之地 宜當向事 咸豐四年十月二十七日 後 壬子癸丑本司輪上各樣成冊 今年本司已修上各樣成冊 關報牒自乙巳至今年條 重記一等”.

받은 문서도 섞여 있어 원본은 올려 보내지 못하고 비변사와 관련된 문서만 골라 베껴 보내겠다.’는 문서를 보냈다.⁶⁰⁾ 앞서 10월 27일 비변사에서 보낸 문서에는 기록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 기록과 각종 성책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임자년(1852) 및 계축년(1853)에 비변사로 보낸 성책 또는 금년(1854)에 비변사로 보낸 성책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기록은 2장의 承發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언급한대로 3건 작성하여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병영에 각각 보관하고 1건은 비변사에 上送하였기 때문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또는 병영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을 비변사에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상우병영에서 관보첩은 다른 관서와 주고받은 문서도 섞여 있어 원본을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영총』에 비변사와 주고받은 관문과 첩정을 등서하여 별도로 관리한다는 지침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상우병영에서 비변사와 주고받은 문서는 정확한 관리 상황을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관서와 주고받은 문서도 섞여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경상우병영에서 문서를 등서하여 등록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는데, 경상우병영에서 작성한 다른 등록들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경상우병영은 12월 초10일 비변사에 다시 문서를 보내 임자년과 계축년의 각종 성책과 올해 이미 작성하여 올린 각종 성책, 을사년부터 올해까지의 관보첩 및 重記 1등을 櫃子에 담아 올려 보내고, 궤자에 넣어 보낸 책들의 목록이라 할 수 있는 各件區別數爰成冊을 함께 올려 보낸다는 문서를 올렸다.⁶¹⁾

60)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19a-19b, 1854년 11월 27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爲牒報事 卽到付司關內 本司書吏入接處所 偶然失火 而本營去來文簿 則雖多搜出 而亦不無入於回錄及年條間斷者 今方較準釐正是如乎 凡屬司上文簿 見在於本營件 必以原本 依後錄卽速堅封輸上於本司 以爲互相憑考之地宜當向事教是乎所 啓錄及各樣成冊 當以原本上送 而至於關報牒 自是混謄於各衙門報牒叢雜之中 若以此原本上送 則伏想模糊於考覽之下 故關報牒段 今方一一抄謄 竝與各件文簿 期於從速輸上計料爲乎 緣由牒報爲臥乎事 咸豐四年十一月二十七日”.

61)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20b, 1854년 12월 초10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爲上送事 節到付司關內 本司書吏入接處所 偶然失火 而本營去來文簿 雖多搜出 而亦不無入於回錄及年條間斷者 今較準釐正是如乎 凡屬司上文簿 見在於本營件 必以原本依後錄卽速輸上 以爲互相憑考之地向事後 壬子癸丑本司修上各樣成冊 今年已修

한편 다른 지방관의 등록에도 비변사의 서리 집무실 근처에 불이 난 이후 비변사에서 지방관에게 보낸 문서가 등서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1854년이 포함된 등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비변사에서 충청병영,⁶²⁾ 황해병영,⁶³⁾ 전라좌수영⁶⁴⁾으로 보낸 문서들이 각각 확인된다. 이 중 황해병영은 비변사에서 문서를 접수한 날 바로 비변사에 문서를 보내 접수한 문서의 내용대로 거행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⁶⁵⁾ 이후 보름 뒤 황해병영은 비변사에 각종 성책과 함께 관보첩을 상송한다는

上各樣成册 關報牒至今年條 重記一等 關及後錄教是乎等以 同各件文簿原本外 或有謄書者 自費時日之由 已爲牒報爲有在果 壬子癸丑各樣成册 今年已修上各樣成册 自乙巳至今年關報牒及重記一等 入盛櫃子 堅封上送 而各件區別數爰成册 亦爲修正上送爲臥乎事 咸豐四年十二月初十日”.

62) 『忠淸兵營關子謄錄』(奎15121) 1책 2b-3a, 1854년 10월 27일

“備邊司爲相考事 本司書吏入接處所 偶然失火 而本營去來文簿 則雖多搜出 而亦不無入於回祿及年條間斷者 故今方較準釐正是如乎 凡屬司上文簿見在於本營件 必以原本 依後錄卽速堅封輸上於本司 以爲互相憑考之地宜當向事 咸豐四年十月二十七日”.

63) 『黃海兵營關牒謄錄』(奎15132-v.1-2) 1책 10a-10b, 1854년 10월 30일

“爲相考事 本司書吏入接處所 偶然失火 而本營去來文簿 則雖多搜出 而亦不無入於回祿及年條間斷者 故今方較準釐正是如乎 凡屬司上文簿 見在於本營件 必以原本 依後錄卽速堅封輸上於本司 以爲互相憑考之地 宜當向事後

壬子癸丑本司修上各樣成册

今年本司已修上各樣成册

關報牒自乙巳至今年條

重記一等

甲寅十月三十日 到”.

64) 『全羅左水營啓錄』(奎15097-v.1-5) 1책 49a, 1854년 11월 12일

“甲寅十一月十二日到付

備邊司爲相考事 本司書吏入接處所 偶然失火 而本營去來文簿 則雖多搜出 而亦不無入於回祿及年條間斷者 故今方較準釐正是如乎 凡屬司上文簿 見在於本營件 必以原本 依後錄卽速堅封輸上於本司 以爲互相憑考之地 宜當向事”.

65) 『黃海兵營關牒謄錄』(奎15132-v.1-2) 1책 10b, 1854년 10월 30일

“爲牒報事 節到付司關內 節該本營去來文簿 入於回祿及年條間斷者 今方較準釐正 凡屬司上文簿見在於本營件 必以原本 依後錄堅封輸上於本司 以爲互相憑考之地事 關文到付爲有等以 今方依關辭舉行計科爲乎旡 緣由爲先牒報爲臥乎事

문서를 보냈다. 황해병영도 경상우병영과 마찬가지로 비변사와 주고받은 문서는 따로 정리한 등록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황해병영 소재의 등록에서 일일이 抄出하여 책자를 만들어 올린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⁶⁶⁾

이러한 점을 볼 때 경상우병영에서 기록은 별 건으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관첩은 다른 문서들과 함께 등서하여 보관하였다. 따라서 비변사에서 지방의 문서들이 소실되었을 때 경상우병영의 관첩은 비변사로 그대로 보낼 수 없어 다시 등서한 후 올려 보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상우병영계록』은 1856년 2월, 『경상우병영관첩』은 1854년 2월 문서부터 등서되어 있어 『경상우병영관첩』에 등서된 1854년 문서들이 경상우병영에서 다시 작성하여 올려 보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변사에서 경상우병영에 요청한 關報牒은 1845년부터 1854년까지이다. 즉 1853년까지의 등록이 별 건으로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지 않는 것이고, 1854년의 내용부터 비변사에서 다른 책으로 장책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상우병영은 다음 해인 1855년 3월 29일 ‘병영의 啓本과 報牒 및 來關을 楷書로 베껴 써서 책으로 만들고, 여기에 들어간 붉은 실[紅絲]와 표지[黃衣]를 모두 橫子에 담고 자물쇠를 채워 올려 보낸다.’는 문서를 비변사로 보냈다.⁶⁷⁾ 앞서 12월 초10일에 보낸 문서는 10월 말 비변사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한 회신인데, 이 문서는 경상우병영에서 비변사로 등록을 올려 보낸다는 정기적인 보고로 보인다.

甲寅十月三十日 報”.

66) 『黃海兵營關牒謄錄』(奎15132-v.1-2) 1책 10b-11a, 1854년 11월 14일

“爲牒報事 前矣到付關內乙用良 壬子條管餉穀會計成册一件 軍餉穀會計成册一件 癸丑條管餉穀會計成册一件 軍餉穀會計成册一件 錢米布會計成册一件 重記成册一件合六件 監封上送是乎乙遣 關報牒 自乙已至于今年之間 原本率多遺漏乙仍于 取考本營所在謄錄 一一抄出謄成册子上送爲乎矣 壬子條錢米布會計成册段 反貼件不爲下來 今年條成册 姑無修報者是乎等以 緣由牒報爲臥乎事

甲寅十一月十四日 報”.

67)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2책 24a, 1855년 3월 29일

“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爲上送事 本營啓本與報牒及司來關 楷書傳謄作册 所入紅絲黃衣 竝以入盛橫子 具鎖鑰上送爲臥乎事 咸豐五年三月二十九日”.

『경상우병영관첩』에서 등록을 만들어 올린다는 문서가 등서된 것으로는 유일한데, 『영총』의 지침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정기적인 보고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개성부에서 작성한 등록인 『開城留營啓錄』(奎15089-v.1-4)과 『開城留營關牒』(奎15118-v.1-3)에 1863년 2월, 1866년 2월, 1887년 1월, 1890년 2월, 1892년 2월 각각 개성부에서 비변사로 작년의 계록과 관첩 1通을 의례히 수정하여 상송한다는 문서가 등서되어 있기 때문이다.⁶⁸⁾ 이 개성부에서 작성한 등록의 분량이 소략하고 중간에 빠진 연도들도 있지만, 연초에 비변사로 등록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 정례화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경상우병영에서는 국왕에게 올린 문서와 비변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각각 관리하고 있었다. 국왕에게 올린 문서는 『영총』의 지침에 별도로 등서하여 관리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비변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관리하는 지침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 문서의 내용들을 다른 문서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변사에서 특이 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였다.

5. 맺음말

등록은 조선시대 문서의 보관과 활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등록을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은 국왕에게 올리거나 비변사와 주고 받은 문서가 등서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승정원일기』나 『비변사등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승정원일기』에 지방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문서의 내용을 축약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68) 『開城留營關牒』(奎15118-v.1-3) 2책 9a, 1863년 2월 22일

“癸亥二月二十二日

爲牒報事 本府去壬戌年啓錄關牒一通 依例修正上送 緣由牒報爲臥乎事”.

『비변사등록』도 주로 비변사에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관과 비변사가 주고받은 문서들은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 같은 지방관의 등록들은 당시 지방행정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세기 경상우병영에서 작성한 업무지침서인 『營總』에 수록된 문서의 등서 지침과 경상우병영의 등록들을 통해 등록의 구체적인 작성 방식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은 대체로 『영총』의 등서 지침에 맞추어 작성하였다. 율을 혼동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율 별로 종이를 바꾸어가며 작성하였고, 各項定식의 '備局件啓錄牒式'과 '備局關牒牒式'에 맞추어 등록에 문서들을 등서하였다. 이 비국건계록등식과 비국관첩등식은 비변사에 올려보내는 등록을 작성하는 지침이다. 따라서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에는 경상우병영에서 국왕에게 올리거나 비변사 또는 의정부와 주고받은 문서만 등서되었다. 비국건계록등식은 '書狀牒書式'과 '狀啓牒書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典律通補』別編本朝文字식의 문서 양식과 비교해보면 서장등서식은 狀啓, 장계등서식은 外方啓本을 등서하는 지침이다. 『영총』의 지침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장계와 외방계본을 『경상우병영계록』에 등서할 때는 結語의 투식들을 기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국관첩등식은 關文과 牒모을 등서하는 지침으로, 『經國大典』의 문서 양식과 비교하였다. 이 중 관문은 장계, 외방계본, 첩정과 달리 접수한 문서이기 때문에 등서할 때 문서가 도착한 날짜를 함께 기입하였다. 관문과 첩정은 문서의 起頭에 해당하는 발급 관서와 작성 목적을 쓰는 방식이 유사하다. 그런데 첩정을 등서할 때는 발급 관서를 기입하지 않고 작성 목적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문서와 등록을 작성한 관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에 반복하여 기입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본 글의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경상우병영계록』과 『경상우병영관첩』은 경상우병영에서 비변사로 上送한 등록들이다. 『영총』의 지침들을 보면 문서를 등서하여 책으로 만든 후 올려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비변사의 서책을 보관하던 창고에 불이 났을 때 경상우병영에서 비변사로 다시 올려 보내는 과정들을 검토하

면, 등록 내용의 작성은 경상우병영이고 편책 및 관리는 비변사에서 담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 중인 비변사 또는 의정부가 편저자로 되어 있는 지방관의 등록들도 경상우병영의 사례처럼 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총』과 같은 지침들이 다른 지역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등서 실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별 등록의 사례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조선후기 지방관의 등록 작성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논문투고일(2021. 10. 30), 심사일(2021. 11. 18), 게재확정일(2021. 12. 6)

참고문헌

『經國大典』
 『攷事新書』
 『大典會通』
 『典律通補』
 『備邊司謄錄』
 『宣祖實錄』
 『承政院日記』
 『弘齋全書』

『營總』(B8 A40 1, B8 A40 2)
 『慶尙右兵營啓錄』(奎15103-v.1-4)
 『慶尙右兵營關牒』(奎15128)
 『開城留營關牒』(奎15118-v.1-3)
 『全羅左水營啓錄』(奎15097-v.1-5)
 『忠淸兵營關子謄錄』(奎15121)
 『黃海兵營關牒謄錄』(奎15132-v.1-2)

황위주 외, 2007 『脫草譯註 營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고민정, 2014 『『繼後謄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113, 199-235면.

김건우, 2007 『조선후기 慶尙右兵營의 문서행정에 관한 일고찰 -『營總』을 중심으로-』, 『규장각』 31, 215-235면.

김완호, 2020 『조선후기 社稷署의 謄錄 작성과 문서 행정 -장서각 소장 『社稷署謄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6, 321-360면.

_____, 2021 『조선후기 등록의 편찬과 기록문화자원 가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인수, 2007 『朝鮮後期 慶尙右兵營의 文書 包裝과 呈家式』, 『歷史教育論集』 39, 223-255면.

이근호, 2008 『備邊司謄錄의 敍述體系와 內容』, 『사학연구』 91, 153-187면.

- 이선희, 2005 「18세기 수령과 관찰사의 행정마찰과 처리방식」, 『古文書研究』 27, 85-111면.
- _____, 2009 「조선후기 영남지방 지방관의 행정소통 체계와 조정방식」, 『영남학』 16, 45-75면.
- _____, 2010 「18세기 경기도관찰사의 업무 실태와 특징 -『畿營狀啓謄錄』을 중심으로」, 『藏書閣』 23, 89-115면.

Abstract

Writing and management of Deungrok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Deungrok(膽錄) of
Gyeongsangwoobyongyeong(慶尙右兵營) in the 19th century

Kim, Wanho *

This article is a study examining the writing method of the *Deungrok*(膽錄) through the case of Gyeongsangwoobyongyeong(慶尙右兵營). Based on the *Deungrok* writing guidelines contained in *Yeongchong*(營總), the 19th century work guidebook for Gyeongsangwoobyongyeong, the two *Deungroks*, *GyeongsangwoobyongyeongGyerok*(慶尙右兵營啓錄) and *GyeongsangwoobyongyeongGwancheop*(慶尙右兵營關牒) by Gyeongsangwoobyongyeong, were compared and reviewed. The two *Deungroks* were mostly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Yeongchong*. These *Deungroks*, currently in the collection of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were those written in Gyeongsangwoobyongyeong and sent to Bibyunsa(備邊司). This case corresponds to that sent to a higher-ranking government office without being managed by the government office that created the *Deungrok*.

Key words : Deungrok, Gyeongsangwoodo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 *GyeongsangwoobyongyeongGyerok*, *GyeongsangwoobyongyeongGwancheop*, *Yeongchong*, the King, Bibyunsa, Kyujanggak

*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부 록〉 지방관이 비변사 또는 의정부에 상납한 등록

연번	서명	책수	대상 시기	청구기호
1	江原監營啓錄	3	1831-1832/1856-1858/1860-1861	奎15106-v.1-3
2	江原監營關牒	6	1859-1861/1866-1868/1868-1875/1875-1879/1879-1882/1882-1883	奎15130-v.1-6
3	江華府前留守在任時啓錄及來關	5	1846-1859/1862-1863/1874-1876/1876-1878/1878-1880	奎15088-v.1-5
4	江華留營啓牒錄	1	1881-1882	奎15139
5	開城留營啓錄	4	1861-1862/1873-1875/1890-1892/1884-1889	奎15089-v.1-4
6	開城留營關牒	3	1863-1866/1882-1883/1886-1889	奎15118-v.1-3
7	京畿水營啓錄	2	1858-1860/1861-1870	奎15091-v.1-2
8	京畿水營關報牒牒錄	1	1861-1871	奎15119의1
9	京畿右防禦營啓牒牒錄	1	1873-1880	奎15119의2
10	慶尙監營關牒	1	1785-1787	奎15126
11	慶尙右兵營啓錄	4	1856-1859/1859-1861/1876-1880/1890-1892	奎15103-v.1-4
12	慶尙右兵營關牒	2	1882-1891/1854-1867	奎15128
13	嶺左兵營啓錄	2	1848-1851/1861-1865	奎15102-v.1-2
14	慶尙左水營啓牒錄	1	1843-1884	奎15104
15	慶尙左水營關牒	2	1866-1870/1863	奎15129-v.1-2
16	廣州府前留守在任時啓錄冊	6	1860-1864/1865-1869/1869-1875/1875-1877/1886-1889/1889-1893	奎15087-v.1-6
17	德源府啓錄	2	1883-1886/1886-1889	奎15117-v.1-2
18	東萊府啓錄	9	1849-1850/1860-1861/1862-1863/1863-1864/1867/1869-1871/1870-1872/1871-1874/1883-1889	奎15105-v.1-9
19	松都設賑啓錄	1	1853-1857	奎15090
20	水原府啓錄	3	1874-1877/1866-1869/1844-1858	奎15086-v.1-3
21	義州府狀啓牒錄	6	1840-1841/1852-1853/1854-1860/1860-1868/1874-1876/1884-1893	奎15113-v.1-6
22	義州府狀啓牒錄	1	1877-1881	奎15135의2
23	全羅監司啓錄	7	1829/1845/1847/1849/1854-1855/1876/1885-1889	奎15095-v.1-7

연번	서명	책수	대상 시기	청구기호
24	全羅兵營關牒謄錄	1	1890-1893	奎15123
25	全羅右水營啓錄	2	1853-1860/1861-1862	奎15098-v.1-2
26	全羅左水營啓錄	5	1850-1860/1860-1864/1865-1875/1881-1886/1890-1892	奎15097-v.1-5
27	全羅左水營來關錄	1	1875-1877	奎15124
28	濟州啓錄	5	1846-1858/1866-1872/1881-1883/1883-1884/1883-1884	奎15099-v.1-5
29	濟州牧關報牒	1	1845-1854	奎15125
30	春川留營啓牒錄	1	1888-1890	奎15138
31	錦營啓錄	9	1836-1837/1843-1845/1852/1853-1855/1861/1871-1872/1873-1876/1876-1878/1835-1836	奎15092-v.1-9
32	湖西兵營狀啓謄錄	3	1818-1826/1841-1855/1857-1859	奎15093-v.1-3
33	忠淸兵營關子謄錄	1	1853-1876	奎15121
34	忠淸水營啓錄	6	1842-1844/1861/1863-1865/1866-1869/1880-1882/1882-1890	奎15094-v.1-6
35	忠淸水營關牒	3	1808-1811/1861-1866/1869-1878	奎15122-v.1-3
36	統禦營關子謄錄	1	1888-1892	奎15120
37	統制營啓錄	8	1847-1848/1853-1855-1870-1871/1872-1874/1881-1882/1882-1885/1886-1888/1888-1890	奎15101-v.1-8
38	統制營關牒	2	1883-1892/1871-1879	奎15127-v.1-2
39	平安監營啓錄	37	1830/1831/1833/1833/1834/1835/1835-1836/1838-1839/1840/1840-1841/1841/1842/1842-1843/1844-1845/1844-1845/1847-1848/1848/1848/1849-1850/1850/1850/1851/1852/1852-1853/1855-1857/1857-1858/1858-1859/1860/1861-1862/1863-1864/1865-1866/1866-1867/1867-1869/1869-1870/1872-1873/1873-1874/1883-1884	奎15110-v.1-37
40	平安監營關牒	4	1853-1854/1866-1869/1869-1874/1883-1889	奎15134-v.1-4
41	平安監營審理啓錄	4	1874/1863/1870/1872	奎15111-v.1-4
42	平安兵營啓錄	4	1856-1860/1874-1879/1853-1856/1846-1853	奎15112-v.1-4
43	咸鏡監營啓錄	6	1856/1862-1863/1864-1867/1879-1882/1879-1880/1890-1892	奎15114-v.1-6
44	咸營備邊司關者謄錄	1	1861-1862	奎15136

연번	서명	책수	대상 시기	청구기호
45	咸鏡南兵營啓錄	7	1856-1858/1861-1866/1871-1875/1877-1878 /1881-1891/1884-1888/1888-1891	奎15115-v.1-7
46	咸鏡北兵營啓錄	7	1844-1846-1846-1851/1851-1853/1859-1861 /1874-1876/1876-1878/1888-1890	奎15116-v.1-7
47	咸鏡北兵營關牒啓錄	1	1866-1881	奎15137
48	黃海監營關牒啓錄	1	1866-1869	奎15131
49	黃海監營狀啓牒啓錄	22	1832/1833/1833/1833-1834/1838/1845/1848 /1848-1849/1850-1851/1852/1853-1854/185 5/1860/1860-1861/1863-1864/1866-1868/18 82/1883/1887-1889/1899/1898-1899	奎15107-v.1-22
50	黃海兵營啓錄	4	1853-1856/1861-1862/1865-1867/1884-1892	奎15108-v.1-4
51	黃海兵營關牒啓錄	2	1853-1862/1882-1890	奎15132-v.1-2
52	黃海水營啓牒	4	1870-1876/1876-1878/1880-1887/1888-1892	奎15109-v.1-4
53	黃海水營報牒	1	1878-1882	奎15133